

희망을 여는 한 장의 행복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주거복지사업 재투자 내역
* '06년 4,900억원 * '07년 5,037억원
* '08년 4,647억원 * '09년 5,228억원(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매입임대 - 기초생활 수급자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전세임대 - 저소득층(소년소녀가정 포함)을 위한 주거 지원
폭방등 주거지원 - 폭방 거주자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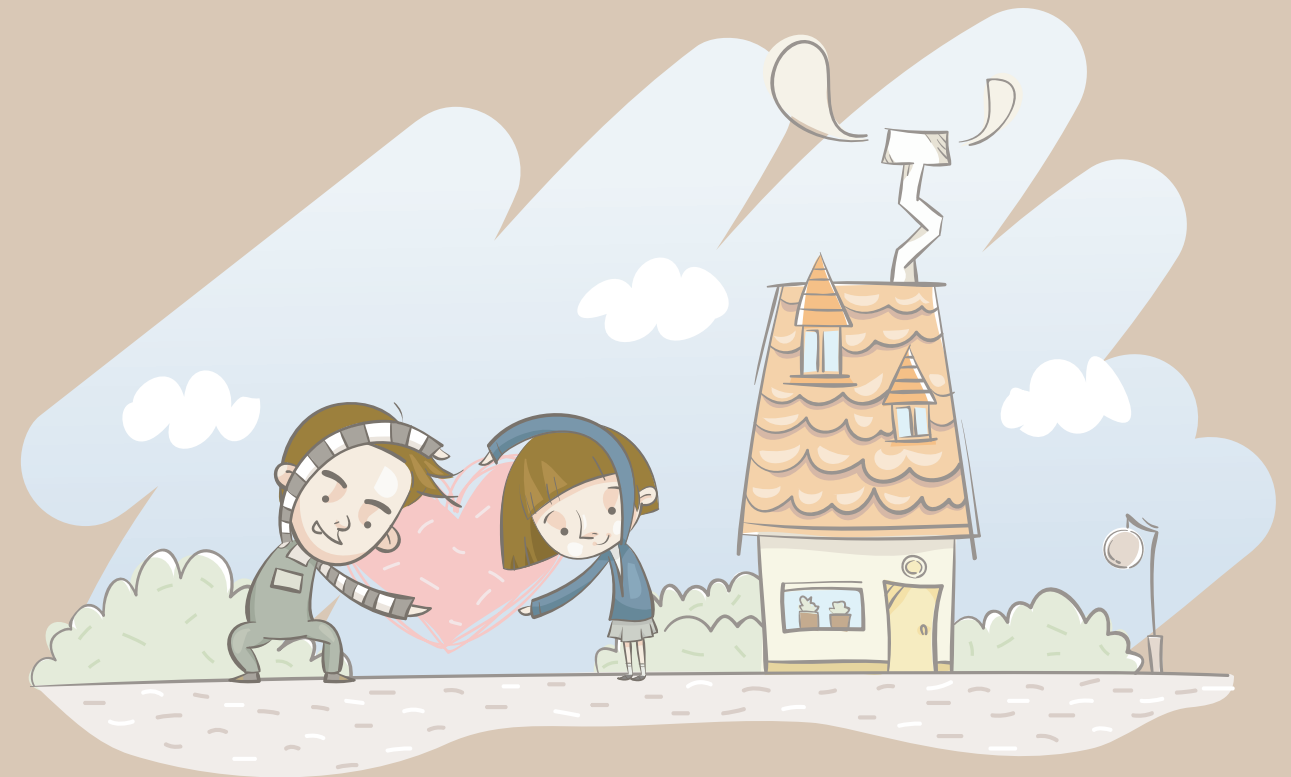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화상담 : TEL : 02)2110-8045 FAX : 02)504-9146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방법

2009. 3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국토해양부

세계최고의 주택도시 전문기업
대한주택공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원 중 일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Contents

1.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입주대상	3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	4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	5
2.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공급신청서	6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6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7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8
3. 입주자 자격확인 방법	9
4. 소득 확인 절차 및 유의사항	10
5. 소득 증빙서류	12
▶[공통서류] 건강(의료) 보험증	12
▶[공통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3
▶[일반근로자(작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4
▶[일반근로자(신규취업 및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5
▶[일반근로자(신규취업 및 전직자)]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6
▶[보육교사,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17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18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	19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20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21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	22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3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대리점 수수료 지급현황	24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25



1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입주대상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

구 분	입 주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 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 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입주자 - 장애인, 보호아동,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 자 · 입주자는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
쪽방 · 비닐하우스거주자	쪽방 ·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긴급주거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구 분	입 주 대 상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 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출산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양의 경우에는 임양신고일로 한다)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구 분	입 주 대 상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 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출산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양의 경우에는 임양신고일로 한다)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청유형 : 일반1형(방1)(), 일반2형(방2)(), 일반5형(방3)()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는 일반1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인가구는 일반1형주택(원룸) 및 일반2형 주택을 원하시는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5형은 그룸을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가능합니다.
 ※ 신청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연락처 :(0) - () - (집전화 및 연락가능한 휴대전화 필히 기재)
 ■해당 시,군,구로의 전입일: 년 월 일

☐ 신청순위 (해당란에 ○표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소득 50%이하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교부자

☐ 자산(세대원전원) 확인 (해당 주민자치센터 작성, 토지 및 자동차는 위의 소득50%이하자의 경우에 한함)

무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자동차 (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	------------------------	--------------------------

* 자산확인 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입주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정항목(해당 주민자치센터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월	()점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3점 2점 1점	()년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3人以上 나.2인 다.1인 *별도가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 하가구구성원 중 증명제외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인 *별도가점 -부양()	()점 ()점
④ 청약저축 가입여부 (청약저축가입통장 사본 -회차표시부분-으로 증명)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회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임식부엌 전용수세식화상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전용임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상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전용임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상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전용임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상실()	()점

총점		점	확인	
----	--	---	----	--

위와 같이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 귀하

1. '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3,894,709원
'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1,947,350원
 2. 자산(세대원 전원) 확인은 무주택 여부 및 일정 기준 이하의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를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류 접수시 확인하여 작성하고 자산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결정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
 - 자산(토지·자동차) 확인시 입주대상자 제외 기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자동차 :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3. 부양가족은 세대주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
 4.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신청자(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 붉은 선은 해당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작성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해당사항을 기재 혹은 “O”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호 ■ 연락처 : () - , () - (집전화 및 연락가능한 휴대전화 기재) * 해당 시,군,구로의 전입일 : 년 월 일 ■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신청가능 ☐ 신청순위 (해당란에 O표시)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2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동족중 교부자			
☐ 자산(세대원전원) 확인(해당 주민자치센터 작성, 해당할 경우 O표시) (토지 및 자동차는 위의 소득50%이하자의 경우에 한함)					
무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자동차 (과세표준액 2천백만원 이하)	
*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결격처리될 수 있음 ☐ 입주희망시기 : 년 월 (단, 금년내 입주가 가능 하여야 함)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 표는 해당 주민자치센터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월	()점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이상 나. 3년이상 5년미만 다. 3년미만	3점 2점 1점	()년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이상 나. 2인 다. 1인 *별도가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세대주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인	()점	
④ 청약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회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임싯부와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임싯부위,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전용임싯부위,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전용임싯부위 () -전용수세식 화장실 ()	()점	
총점			(인)		

위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시장) 귀하

1. '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3,894,709원
'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1,947,350원
 2. 자산(세대원 전원) 확인은 **무주택 여부** 및 일정 기준 이하의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를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류 접수시 확인하여** 작성하고 자산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결정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
 - 자산(토지·자동차) 확인시 입주대상자 제외 기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자동차 :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3. 부양가족은 세대주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
 4.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신청자(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 붉은 선은 해당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작성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해당사항을 기재 혹은 “O”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시 () 구 () 동 () 번지 호 () (집전화 및 연락가능한 휴대전화 기재)
 ■연락처 : () () () () () ()

☐ **신청순위** (해당란에 O 표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50%이하	
1순위	혼인 3년 이내 및 기간내 출산(임양)	2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기간내 출산(임양)
3순위	혼인 5년 이내		

구분	인정여부 (해당 동사무소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혼인신고일	년 월 일 ()개월	()	()	()
② 자녀출생일(임양신고일) *주민등록표 기준	년 월 일 ()개월	()	()	()

☐ **자산(세대원 전원) 확인** (해당 주민자치센터 작성, 해당할 경우 O 표시)
 (토지 및 자동차는 위의 소득50%이하자의 경우에 한함)

무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자동차 (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	------------------------	--------------------------

*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결격처리될 수 있음

☐ **입주희망시기** : 년 월 (단, 금년내 입주가능 하여야 함)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정항목** (아래 표는 해당 주민자치센터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자녀의 수	가. 3인 이상 나. 3인 미만 다. 1인	3점 3점 1점	()인	()점
② 세대주의 나이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3점 3점 1점	()세	()점
③ 청약저축 가입여부 (신청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3점 1점	()회	()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포함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3점 1점	()개월	()점
⑤ 사설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나. 3년 미만	3점 1점	()개월	()점
⑥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2점	등록증 교부 (O, X)	()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원 주민 등록증 교부 포함)	1점	부양여부 (O, X)	()점

총점 점
확인 (인)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시장) 귀하

- '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3,894,709원
'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1,947,350원
 - 자산(세대원 전원) 확인은 무주택 여부 및 일정 기준 이하의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를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류 접수시 확인하여 작성하고 자산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
 - 자산(토지·자동차) 확인시 입주대상자 제외 기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자동차 :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 부양가족은 세대주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
 -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신청자(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 굵은 선은 해당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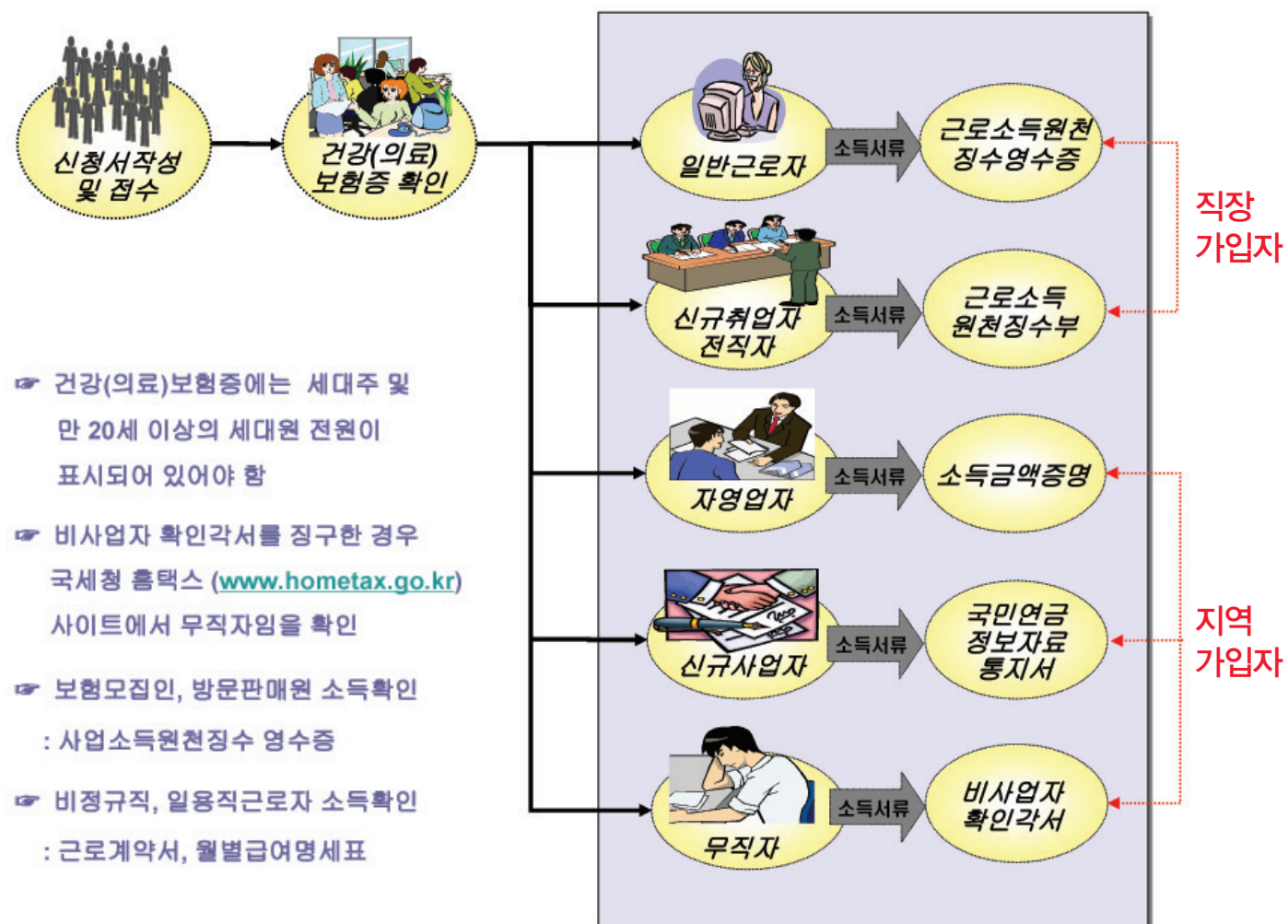
3 입주자 자격확인 방법

-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부도공공임대퇴거자, 공동생활가정,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우선 건강(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의 직업유무 및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아래의 소득입증서류를 통해 소득을 확인[단, 세대원을 포함하여 보유한 토지 합산액이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보유한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의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일 것]
 - 필수 제출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②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목록[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 입증서류도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접수장소

❖ 소득확인절차

- 제출한 건강(의료)보험증을 기준으로 소득확인서류를 징구할 대상자를 파악한다.
(세대원이 세대주와 건강(의료)보험증이 다를 경우 세대원의 보험증을 모두 징구한다.)
- 신청자 및 각 세대원이 의료보험상의 부양자인지 피부양인지 확인한 후 부양자는 소득확인 대상자로 보고 해당 서류를 받으며, 피부양자는 다른 소득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무직자로 판단하여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징구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대상자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한다.
- 소득확인 대상자는 건강(의료)보험증상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해당 직장에서 관련한 소득확인용 서류를 징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기타 근로자 소득확인용 서류를 징구한다



❖ 기타 유의사항

- '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1,947,350원
※ 가구의 수와 상관없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월평균소득액 산출방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소득은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함.
 - 건강(의료)보험증상의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으로 실제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 전년도 일부기간만 휴직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추정한다.
 -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을 하고 당해년도에 복직한 경우 당해년도 근로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다.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다.
-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공통서류] 건강(의료) 보험증

94 가 입 자 (세 대 주)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성 명	정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5	성 명	2002. 09. 01
증 번 호	7-124	이	2003. 07. 17
사 기 호	7-123	이	2003. 04. 01
업 명	황지	이	2007. 07. 31
장 명		===== (이하여백) =====	
퇴직등으로 직장자격을 잃거나, 가족이 직장 취득 (입사) 시 30일 이내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속지사: 태백경선지사 ☎ : 033) 552-130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Homepage : www.nhic.or.kr		본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단 사용하면 범죄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발행일자: 2007.08.21	

가 입 자 (세 대 주)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성 명	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3	성 명	2000. 07. 05
증 번 호	1-304	===== (이하여백) =====	
사 기 호			
업 명			
장 명			
퇴직등으로 직장자격을 잃거나, 가족이 직장 취득 (입사) 시 30일 이내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속지사: 성남북부지사 ☎ : 1577-1000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Homepage : www.nhic.or.kr		본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단 사용하면 범죄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발행일자: 2008.04.30	

1.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의료)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징구
2. “사업장”란에 가입된 내용을 통해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판단한 후 일반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 등 직업에 따라 소득증빙서류를 구분 징구
3. 20세 이상의 세대원이 건강(의료)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직자로 판단되므로 “비사업자 확인각서” 징구 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무직자임을 확인

▶▶[공통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통보번호 : 2-03 -2008 -2			
수신기관명	요양기관용	자격확인요청일	2008.01.21
증 번 호	7110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주식회사 (9070)
가 입 자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이	68 -	
자 격 확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이	68	2001.10.01	
이	41	2003.10.21	
박	67	2001.10.01	
이	95	2001.10.01	
이	97	2001.10.01	
		이하여백	
위와같이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			
2008.01.2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2008.02.05 까지 유효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의료)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징구
2. “사업장”란에 가입된 내용을 통해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판단한 후 일반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 등 직업에 따라 소득증빙서류를 구분 징구
3. 20세 이상의 세대원이 건강(의료)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직자로 판단되므로 “비사업자 확인각서” 징구 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무직자임을 확인

▶▶[일반근로자(작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

관리번호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보관용】

거주구분 ☒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 내국인D/ 외국인2
 외국인단일세율적용 ☐ 예 1 / ☒ (한 2)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정수
의무자
소속자

①법인명(상호) (주)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장등록번호 211-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서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경기

⑨귀속연도 2008. 06. 01 부터 2008. 12. 31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로
구분
주(원) 중(전) ⑪-1 납세조합 합계

⑪근무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220-86-84030
 ⑬급액 11,550,000 7,810,000 19,360,000
 ⑭상액 440,000
 ⑮인정상액
 ⑯-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⑯계 11,550,000 8,250,000 19,800,000
 비과세 ⑰연구활동비 ⑱국외근로 ⑲-1야간근로수당 ⑲-2출산보육수당 ⑲-3외국인근로자 ⑲-4그밖의 비과세 ⑲비과세소득계
 소득 -607,130 -607,130

⑳총급액(⑬+⑭) 19,800,000
 ㉑근로소득공제 10,720,000
 ㉒근로소득금액 9,080,000
 ㉓본인 1,000,000
 ㉔배우자
 ㉕부양가족(명)
 ㉖경로우대(명)
 ㉗장애인(명)
 ㉘부녀자
 ㉙자녀양육비(명)
 ㉚-1출산·입양자(명)
 ㉛다자녀추가공제(명)
 ㉜국민연금보험료공제 846,900
 ㉝-1기타연금보험료공제
 ㉞외국인연금소득공제
 ㉟보험료 617,000
 ㊱의료비
 ㊲교육비
 ㊳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㊴-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㊵기부금
 ㊶혼인·이사·장례비
 ㊷계 617,000
 ㊸표준공제 1,000,000
 ㊹차감소득금액 6,233,100
 ㊺결정세액(㉓-㉙-㉚-㉛-㉜-㉝-㉞-㉟-㊱-㊲-㊳-㊴-㊵-㊶-㊷) 206,395
 ㊻구분 소득세 주민세 동헌특별세
 ㊼결정세액 206,395 20,639 227,034
 ㊽중(전) 근무지 84,600 8,440 93,040
 ㊾주(원) 근무지 118,440 11,830 130,270
 ㊿차감정수세액 3,350 360 3,710

국민건강보험료 522,420 원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고용보험료 55,090 원
 장기요양보험료 10,140 원 2009 년 02 월 28 일
 정수(보고)의무자
 귀하
 (뒷면 계속) 210mm x 297mm(일반용지 54g/m²(세탈용종))

▶▶[일반근로자(신규취업 및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귀속연도 2008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정수의무자 ②법인명(상호) (영안)
 소득자 ③사업자등록번호 106-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 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1 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월별 7)지급연월 8)급여액 9)상여액 10)인정상여 10)-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11)계 12)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1 0 0 0 0
 2 0 0 0 0
 3 0 0 0 0
 4 0 0 0 0
 5 0 0 0 0
 6 0 0 0 0
 7 0 0 0 0
 8 0 0 0 0
 9 2008/10/10 1,649,700 0 0 1,649,700 43,180
 10 2008/11/10 1,236,300 0 0 1,236,300 15,450
 11 2008/12/10 1,165,125 0 0 1,165,125 12,600
 12 2009/01/09 1,447,450 0 0 1,447,450 29,420
 계 5,498,575 0 0 5,498,575 100,650

비과세 소득

월별 13)지급연월 14)의화 15)원화 16)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연구활동비 16)-1 기타비과세 17)내용 18)금액

1 0 0 0 0
 2 0 0 0 0
 3 0 0 0 0
 4 0 0 0 0
 5 0 0 0 0
 6 0 0 0 0
 7 0 0 0 0
 8 0 0 0 0
 9 0 0 0 0
 10 0 0 0 0
 11 0 0 0 0
 12 0 0 0 0
 계 0 0 0 0 0

근로소득원천징수액

월별 19)간이세액 차감원천징수액 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20)소득세 21)주민세 22)농어촌특별세 23)연금보험 24)건강보험 25)고용보험 26)기부금 비고
 1 0 0 0 0 0 0
 2 0 0 0 0 0 0
 3 0 0 0 0 0 0
 4 0 0 0 0 0 0
 5 0 0 0 0 0 0
 6 0 0 0 0 0 0
 7 0 0 0 0 0 0
 8 0 0 0 0 0 0
 9 19,810 1,980 0 36,670 21,530 7,420
 10 6,960 690 0 36,670 21,530 5,560
 11 5,670 560 0 36,670 21,530 5,240
 12 13,240 1,320 0 36,670 21,530 6,510
 계 45,680 4,550 0 146,680 86,120 24,730

작성일자 : 2009년 02월 16일 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1. 건강(의료)보험증상의 사업장과 정수의무자, 신청자(세대원 포함)와 소득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재직증명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귀속연도로 근무 개월수 확인
3. 총급여액(21번) 금액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월 소득액 산출
4. 작년도 전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혹은 귀속연도로 전직후 근무기간을 확인한 후, 주(원) 급여액을 전직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월 소득액 산출
 * 당해 신청자의 전직후 근무기간이 7개월 이므로 월 평균 소득액은 11,550,000원/7개월 = 1,650,000원
 *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전에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1. 건강(의료)보험증상의 사업장과 정수의무자, 신청자(세대원 포함)와 소득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지급연월로 근무기간 확인
3. 급여액 합계를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 소득액 산출
 * 당해 신청자의 근무기간이 4개월이므로 월 평균 소득액은 5,498,575원/4개월 = 1,374,640원

▶▶[일반근로자(신규취업 및 전직자)]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처리기간 즉 시	
납세자	성명	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경기도							
징수의무자	상호 또는 명칭	신성		사업자등록번호		128-			
	사업장 소재지	경기							
	대표자	우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의 사용 목적		기타		제출처	주택공사	소요수량	1		
년월	급여액	세액	납부년월일	년월	급여액	세액	납부년월일		
2008/01	2,081,938	36,560	2008/02/10	2008/08	1,671,335	16,000	2008/09/10		
2008/02	2,059,429	35,520	2008/03/10	2008/09	2,208,033	37,720	2008/10/10		
2008/03	2,180,271	41,100	2008/04/10	2008/10	2,208,033	37,720	2008/11/10		
2008/04	1,932,741	29,110	2008/05/10	2008/11	2,039,117	34,030	2008/12/10		
2008/05	2,341,855	50,750	2008/06/10	2008/12	2,170,153	40,080	2009/01/10		
2008/06	2,021,085	33,190	2008/07/10						
2008/07	2,307,801	39,880	2008/08/10	계	25,221,791	431,66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원천징수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02 월 17 일 신청인 장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원천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9 년 02 월 17 일 증명자(원천징수의무자) 신성 (서명 또는 인)									
위 증명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담당자 성명)									

1.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대신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음
2. 건강(의료)보험증상의 사업장과 징수의무자, 납세자와 신청자(세대원 포함)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3. 재직증명서 혹은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상의 급여액 지급기간으로 근무기간 확인
4. 급여액 합계를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 소득액 산출

* 당해 신청자의 근무기간이 12개월이므로 월 평균 소득액은 25,221,791원/12개월 = 2,101,810원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보육교사,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서 (연봉제)

____복사:____ (이하“갑”이라한다)과 근로자 ____허____ (이하“을”이라한다)는 상호합의 하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조건
 - (가) 출퇴근시간 : 08:30 - 18:30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 (나) 유급휴일 : 주휴일 (주중 1일)
 - (다) 임 금
 - 1) 연 봉 : ① 연봉액 : 13,000,000 원
 - ② 연봉내역 : 기본월급 : 연봉액/13개월 = 1,000,000 원
 - ③ 제수당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휴일근로 및 월차,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 다.
 - 2) 퇴직금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갱신) 후 매년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
2. 취업장소 : 경기도 부천시
3. 취업직종 : 사무직
4. 근로계약기간 : 2008년4월21일~2009년4월21일
5. 계약해지 사유
 -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②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 ④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 ⑤ 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6. 계약의 연장 :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 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2008 년 06 월 11 일

“갑” 복사 대표이사 : 고

“을”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58번지 동진아파트 다-307
 성 명 : 허
 주민등록번호 : 85

1. 건강(의료)보험증상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보육교사,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혹은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징구(단,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2.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거나 임금지급조서의 지급내역으로 월 소득액 산출

* 당해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액은 13,000,000원/13개월 = 1,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 상기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617- 상 호 : 그린 성 명 : 박 개업 년월일 : 1999년 6월 5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경남 사업자의주소 : 부산 사업의 종류 : ☒ 소매 ☐ 제조 교 부 사 유 : 공동 사업자 : 주류판매신고번호 : 1999년 6월 9일 금정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31- 법인명(단체명) : 대한 대 표 자 : 강 개업 년월일 : 2006년 01월 17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사업의 종류 : ☒ 제조업 ☐ 서비스업 교 부 사 유 : 정정 2008년 12월 22일 남인천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등록번호 : 141- 상 호 : 성 명 : 김 주민등록번호 : 개업 년월일 : 2008년 05월 30일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사업의 종류 : ☒ 운수업 ☐ 제조 교 부 사 유 : 사업장이전 공동 사업자 : 2008년 10월 30일 파주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 220- 법인명(단체명) : 대한 대 표 자 : 김 개업 년월일 : 2005년 07월 01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사업의 종류 : ☒ 서비스 ☐ 학술 교 부 사 유 : 정정 2006년 04월 05일 역삼세무서장

1. 건강(의료)보험증상의 지역가입자 중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징구

2.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의 종류, 대표자, 사업기간을 확인한 후 적합한 소득서류를 판단

-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받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 *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

발급번호		소득금액증명		처리기간
1596-478-1919-062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즉시
주 소	서울	주 민 등 록 번 호	72	
성 명	김	(단위 : 원)		
소 득 구 분	원천징수의무자	소 득 금 액	총결정세액	
구 속 연 도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대상급여액)		
종합소득세				
2004		9,386,997	506,500	
합계 ==>		9,386,997	506,500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서초 세 무 서 장 (인)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 소득금액내용		
담당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연락처	02)3011-6246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과세대상급여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당해년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본 증명은 세무서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의료)보험증상 지역가입자이고 사업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징구하여 신청자(세대원 포함)와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동일인지 확인

2.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기간을 확인

3.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 소득액 산출

* 당해 신청자의 사업기간이 1년일 경우 월 평균 소득액은 9,386,997원/12개월 = 782,240원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발급번호	사실증명		처리기간
90459			즉시
납세자	①주소또는거소 (법인·은본점소재지)	서울	
	②사업장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상호(법인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성명(대표자)	이	⑦주민(법인)등록번호 72
	⑧사용목적	임대아파트 신청용	⑨수량 1
과세연도 (사업연도)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위 납세자는 2007년 12월 06일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2006년 소득금액은 669,000원, 총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06일 신청인 이 (서명 또는 인) 강 서 세 무 서 장 귀 하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2007년 12월 06일	
담당자		강 서 세 무 서 장	
연락처	2630-4222		

210×297mm(신문용지 54g/㎡)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발급번호 2009-4126-003370 발급일자 2009.02.17

구분	총 납 부 할		총 납 부 한		총 납부하지 않은		총 납부할 수 없는	
	월수	연금보험료	월수	연금보험료	월수	연금보험료	월수	연금보험료
보 험 료	71	6,176,400	71	6,176,400	0	0	0	0
추 납 금	0	0	0	0	0	0	0	0
반 납 금	0	0	0	0	0	0	0	0
보험료납부기간 6,176,400 (71)					일시금지급기간 0 (0)			
반납금납부기간 0 (0)					총 가 입 기 간 6,176,400 (71)			
□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년 월 일	월	분	구 분	기 준 소 득 월 액	납 부 할	납 부 한	납부하지 않은	
				월수/연금보험료	월수/연금보험료	월수/연금보험료		
19880511	사업장	신규가입	(907-83-)	서부				
	198805-198810	납부	130,000	6	23,400	6	23,400	0
19881112	사업장	사용종료	(907-83-)	서부				
19920518	사업장	재가입	(907-84-)	경기				
	199205-199210	납부	310,000	6	55,800	6	55,800	0
19921114	사업장	사용종료	(907-84-)	경기				
19930724	사업장	재가입	(907-84-)	경기				
	199307-199307	납부	310,000	1	18,600	1	18,600	0
20030829	사업장	재가입	(907-00-)	세종				
	200308-200403	납부	1,060,000	8	763,200	8	763,200	0
	200404-200408	납부	1,210,000	5	544,500	5	544,500	0
20040905	사업장	재가입	(907-00-)	세종				
	200409-200409	납부	1,210,000	1	108,900	1	108,900	0
20050622	사업장	재가입	(907-00-)	세종				
	200506-200603	납부	990,000	10	891,000	10	891,000	0
	200604-200703	납부	1,130,000	12	1,220,400	12	1,220,400	0
	200704-200803	납부	1,210,000	12	1,306,800	12	1,306,800	0
	200804-200901	납부	1,382,000	10	1,243,800	10	1,243,800	0
	200902-200902	납부	1,382,000	0	0	0	0	0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 1 - JAD12S01-1050173-20090217-131613

1. 건강(의료)보험증상의 지역가입자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가 가능
2. 기한후 신고한 사실증명상의 납세자 정보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3.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기간을 확인한 후 사실증명상의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 소득액 산출

* 당해 신청자의 사업기간이 6개월일 경우 월 평균 소득액은 669,000원/6개월 = 111,500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신청자(세대원 포함)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연도까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 후 공급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월 소득액을 유추

* 당해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액은 1,382,000원으로 유추함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과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

NPS 2006.09월 통지란 성명: 정 님

통지내역

2006년 9월 1일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표준소득월액 : 670,000원 (17등급))

-공단을 사정한 연금지급, 보험료환급 등에 대해 의심스런 전화를 받는 경우 가까운 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로 확인바랍니다.
 -보건복지 및 긴급지원 상담은 지역번호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변동내역을 통지하며,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납내역

2006년 09월 14일 현재 미납내역이 없습니다.

NPS 국민연금관리공단 화성지사 지사장(직인생략)

NPS 0175718

연금보험료 영수증(납부자용)

월납 2006.09 월분 정기분

성명	정
납부자번호	개인정보미기재
분류기호	4123-20
납부기한	2006년 10월 10일
보험료	60,300원
납기후 보험료	62,100원
납기후 기한	2006년 11월 10일

●발행일 2006년 09월 19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납부장소 : 각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문의(☎) : 국번없이 "1355번"(전국 동일)

연금보험료 수납의뢰서(수납기관용)

월납 2006.09 월분 정기분

성명	정
납부자번호	개인정보미기재
분류기호	4123-20
납부기한	2006년 10월 10일
보험료	60,300원
납기후 보험료	62,100원
납기후 기한	2006년 11월 10일

744123310200609021021724281092301
 061010000000006030070000000621005

NPS 국민연금관리공단 화성지사 수납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3호 서식(3)] (제3쪽)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① 귀속연도 2005년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거주지국	거주지국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
 (소득자보관용)

경수 ② 법인명(상호) 경도 ③ 대표자(성명) 백 ④ 사업자등록번호 129-

의무자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경기 성남

소득자 ⑦ 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 선 ⑩ 주민등록번호 81

⑪ 주소 경기도

수입금액 ⑫ 발생처구분 ⑬ 법인명(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발생기간 ⑯ 지급액(수입금액) ⑰ 사업기간 ⑱ 연원천징수금액 [(⑯×⑰)×12개월]

주(원) 2005년 1월~2005년 12월 48,446,419 12개월 48,446,419

중(원) ⑲ 연월일 ⑳ 원월 ㉑ 원월

사업원천징수금액 계 ㉒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48,446,419 12개월 48,446,419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㉓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계 (124) 48,446,419 12개월 48,446,419

사업별 ⑳ 연원천징수금액(㉒) ㉓ 적용소득분 ㉔ 연원천징수금액 ㉕ 당해연도소득금액 ㉖ 비고

보험모집 48,446,419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계 [㉕ 12개월×㉖] 비교

방문판매 11,093,925 8,560,000 2,533,925 11,093,925 11,093,925

(124)합계 48,446,419 11,093,925

⑳ 사업소득 금액(㉒) 11,093,925 ㉓ 종합소득 금액 계 5,600,000 구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㉔ 본인 1,000,000 ㉕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㉖ 결정세액 439,514 43,951 483,465

㉗ 배우자 ㉘ 연금저축소득공제 ㉙ 기납부세액 ㉚ 중(원)근로자세액 ㉛ 주(원)근로자세액

㉜ 부양가족(4명) 4,000,000 ㉝ 부가소득합산자득소득공제 ㉞ 차감납부한세액 -1,013,820 -101,320 -1,115,140

㉟ 경로우대(명) ㊱ 장애인(명) ㊲ 기부공제 ㊳ 종합소득과세표준 5,493,925

㊴ 부녀자 ㊵ 자녀양육비(명) ㊶ 차감납부한세액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2006년 1월 25일

정수(보고)외무과 백 (서명)

㉗ 표준공제 600,000 ㉘ 세액공제 ㉙ 전담세액 439,514

㉚ 연금보험료공제 ㉛ 기부금공제 ㉜ 조세특례공제

㉝ 기부금공제 ㉞

원본대조필 신종민 귀하

㉟ 부양가족공제와 명세(당해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를 기재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연계내역 전 명 주민등록번호 원제내역 전 명 주민등록번호 원제내역 전 명 주민등록번호

※ 본계표는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 직계비속, 원계존속=3, 기타=4 (4,5,6의 경우 소득자의 배우자의 직계와 원계 포함) 본내역의 직계존속은 1, 외국인 9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약칭하여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처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일, 폐업한 경우에는 휴일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㉛ 차감납부한세액이 소득부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금액항 소수점 이하 22를 버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제철용종)

1.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신청자(세대원 포함)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
2. 통지내역에 기재된 표준소득월액이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지를 확인

* 당해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액은 670,000원으로 유추함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소득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과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1.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파악이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3. 당해 연도 소득금액(23번)을 발생기간(16번)으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액 산출

* 당해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액은 11,093,925원/12개월 = 924,490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대리점 수수료 지급현황

대리점 수수료 지급현황

소 속	안		
성 명	이	대리점명	
사 번		업 사 일	20
사업자번호	201-90-	주민등록번호	69
사업장주소	경기 광명시		

(단위 : 원)

년 / 월	지 급 액	년 / 월	지 급 액
2006-01	978,010	2006-07	700,740
2006-02	336,740	2006-08	1,754,940
2006-03	1,721,810	2006-09	2,909,880
2006-04	2,516,470	2006-10	2,845,780
2006-05	1,687,040	2006-11	2,552,320
2006-06	834,090	2006-12	2,171,950
합 계			21,009,770

상기 보험대리점에게 보험모집 및 집금 수수료를 위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2007.09.18

H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발행인: 308161 조부희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중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는 아래 해당자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신청시에 이를 제출하지 않고 귀 지자체가 해당자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 사실 여부를 조회함에 동의하며

만약 귀 지자체에서 아래 해당자에 대해 국세청 등에 사실조회 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에는 입주자 선정시 결격처리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 제출 해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사업자여부 조회결과
조	76 -	본인	有
박	77 -	처	無
조	06 -	자	無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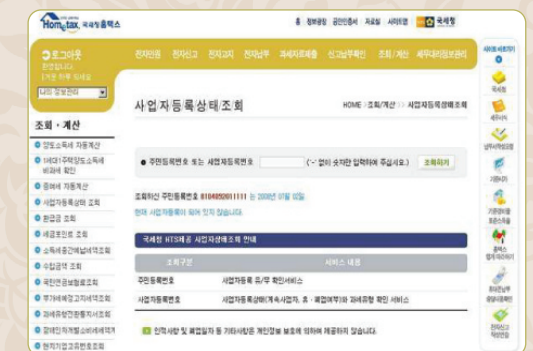
2007년 10월 31일

신청자(각서인) : 조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1. 건강(의료)보험증상 지역가입자이고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보험판매원 등은 대리점 수수료 지급현황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로 대체
 2. 수수료 지급액의 합계를 지급기간 혹은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 소득액 산출
- * 당해 신청자의 사업기간이 1년이므로 월 평균 소득액은 21,009,770원/12개월 = 1,750,810원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무직자가 있을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징구
 2.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징구한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무직자임을 확인
- * 비사업자 확인각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치



도시발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기업

청렴은 국민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관련 문의처 |

지 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본 사	주거복지사업팀	031) 738-4081~4, 4086~90
서울 지역 본부	주거복지팀	02) 3416-3605, 3700
경기 지역 본부	주거복지팀	031) 250-8179, 8325~6, 8369
부산 지역 본부	주거복지팀	051) 890-0347~9
인천 지역 본부	주거복지팀	032) 450-8060
강원 지역 본부	주거복지팀	033) 760-6243, 6246
충북 지역 본부	주거복지팀	043) 290-3260~7
대전충남 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42) 602-4286, 4142
전북 지역 본부	주거복지팀	063) 240-2534, 2537
광주전남 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2) 380-0421
대구경북 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53) 603-2733, 2744
울산 지역 본부	주거복지팀	055) 269-8462, 8469, 8341, 8457
제주 지역 본부	주거복지사업팀	064) 710-1127, 1129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http://jeonse.jugong.co.kr>

| 대한주택공사 고객상담실 |

1588-9082

www.jugong.co.kr



이 행복... 꼭 지켜야겠어!

승용차 안에서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던 인구씨네 8가족은 이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프로그램 "동행"에 출연했던 김인구씨 가족은 13,969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대한주택공사가 희망을 찾아갑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 함께 꿈을 가꾸어나갈 틈터가 없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소외되고 생활이 힘든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국민들에게 대한주택공사는 희망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희망이 부족한 곳에 사랑으로 찾아갑니다"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전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폭방/비닐하우스거주자 주거지원

고객상담실 T. 1588-9082, 전월세지원센터 T. 1577-3399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합니다

